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1차)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10일

경기도지사 ·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사업목적

- 기술유출·탈취 피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구제절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1차)
- 사업총괄 : 경기도
-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원한도 : 기업당 20,000천원 이내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경기도 내¹⁾ 중소기업²⁾
 -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자격 제한
 -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타 기관 또는 본 기관의 지원 받은 경우

- 공고일 기준 전년도에 이미 심결/판결이 완료된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 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단, 심사위원회 결과 기술유출·탈취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제기한 경우 예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경우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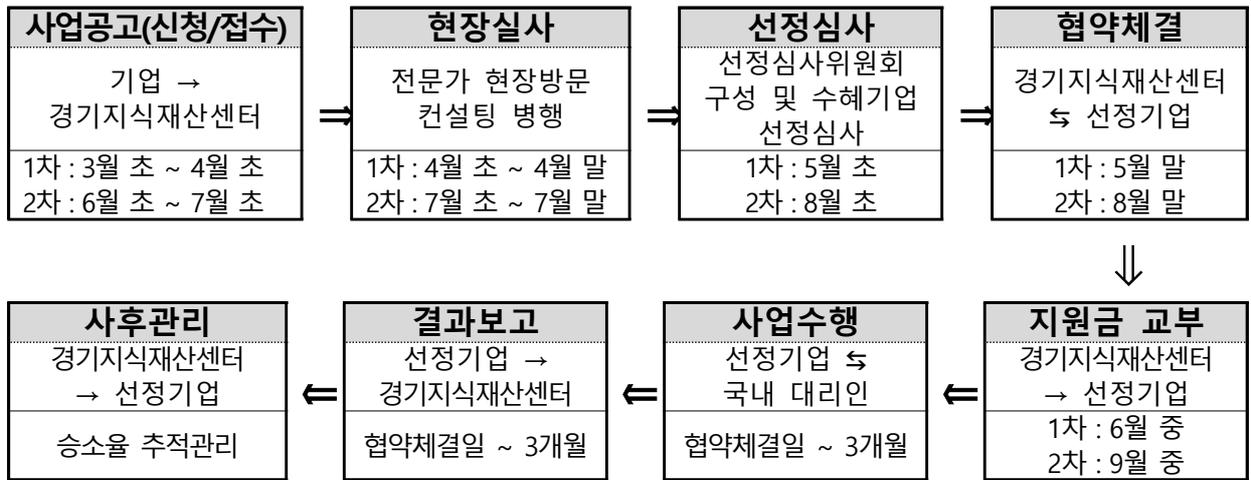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 한도/건	기업 부담금
국내분쟁 지원 (최대 2,000만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이내	30%
	상표등록취소심판	400만원 이내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 가처분	700만원 이내	
※ 지원금은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 복수 지원 가능하나 기업당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판청구/소송제기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결/판결 완료 전이면 지원 가능 (당해연도에 완료된 건도 가능) ※ 신청기업이 청구인(원고)이거나 피청구인(피고)인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선정평가

- (평가위원 구성)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방식을 준용
- (평가기준) 사안의 시급성 및 심판·소송의 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신청 구분	평가지표	배점
심판	해당 심판에서 신청기업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	60
	해당 심판의 결과가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40
소송·가처분	해당 소송에서 신청기업이 승소할 가능성	60
	해당 소송의 결과가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40
(가산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5)
	경기도 전략산업 해당 업종	(5)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3. 10.(화) ~ 2026. 4. 10.(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pms.gtp.or.kr)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제출서류(발급처)	비고
필수	1.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한글파일, PDF파일 모두 제출 직인 날인된 PDF파일
	2. 심판·소송 진행계획서	[붙임2]	
	3-1.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붙임3] [서식1]	
	3-2.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3] [서식2]	
	3-3.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붙임3] [서식3]	
	3-4. 기업의 법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서식4]	
	3-5. 기업의 법 위반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붙임3] [서식5]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필수)	① 국세:국세청 홈택스 ② 지방세:민원24	
5. 심판·소송 관련 비용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등)		심판·소송 대리인(특허/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견적서	
6.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공고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7.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8.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제출	
선택	9. 가산점 증빙서류 (인증기간 확인필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공고 마감일이 인증기간 이내일 것
	10. 심판·소송 관련 증빙서류	접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심판청구서, 소장, 답변서, 이체확인서 등	심판·소송 진행 중인 경우 제출

□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이후에는 제출서류를 임의로 추가·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및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을 부과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사업 종료 후 심판·소송 결과 확정 시까지 수혜받은 사건에 대한 결과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경기도 범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의거해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적용법률
 - ↳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 단, 11개 법 위반사실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감점 미적용(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별첨]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참고)

□ 문의 및 접수처

- 기술보호데스크 : 031-776-48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 경기지식재산센터 : 031-500-3063 / gtpripc@gtp.or.kr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05, (재)경기테크노파크 4동 317호)

□ 별첨

경기도 고시 제2026-8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8.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3. 적용사업 : 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
가.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유예사업
 - 1) (계도·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 2)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 4) (자금·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 5) (시·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 1)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2)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 11개 법률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붙임 1)에 대하여 조건부 적용 유예
다.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 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4) 제출 시 평가 총

점의 20% 감점 미적용

- 단,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다.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
-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
-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도·시군 조회
-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 031-8030-2992)

붙임 1. (유예대상 목록) 47개 법위반 행위목록

2.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4. (서식3) 이의 및 구제신청서

5. (서식4)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